# 뉴욕주 상원의원
# '서 있는 것은 피곤하다' 법안 발의

**글** 김효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팀

2021년 11월 19일 금요일, 뉴욕주 상원의원 Rachel May는 고용주가 모든 직원에게 자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'Sanding is Tiring (SIT) Act'를 도입했다.

May 상원의원의 소매 및 식품 서비스와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전체 교대 근무 시간을 서서 일해야 한다고 전한다.

고용주는 의자의 제공이 직원의 전문성, 효율성 및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.

May 상원의원에 따르면 일을 하다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쉬는 시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장시간 서 있는 것은 많은 직장에서 일어난다.

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(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)의 검토에 따르면 직장에서 장기간 서 있으면 요통, 피로, 통증 또는 심혈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.

May 상원의원은 "직원들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"며 "특히 앉아 있는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"고 말했다. "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직원에게 앉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입니다. 전문성은 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할 필요가 없으며 가능한 한 건강한 작업 환경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."고 말했다.

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앉아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에게 앉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.

May 상원의원은 주의 노동법에 대한 이러한 변경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.